

【 주간포커스 】

보험회사에 대한 은행세 부과 여부 검토

변혜원 부연구위원

세계 각국은 구제금융비용 회수 및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 특히 미국과 IMF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 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은행세 부과 목적의 시스템 리스크 축소 및 구제금융비용 회수에 있다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세 부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공적자금 등 구제금융비용 회수 및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 부채(Liability)에 은행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G20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¹⁾

- 은행세란 구제금융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부채에 대해 부채의 위험 정도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영향 등을 반영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위험이 낮은 예금(Deposit)을 제외한 대형 금융회사의 부채에 대해 ‘금융위기책임분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이하 은행세) 부과를 제안²⁾
 - IMF는 구제금융비용 회수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은행세를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
- 우리나라의 경우 G20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IMF의 은행세 부과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1) 이 밖에도 미국에서 제안한 금융위기책임분담금, 프랑스와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일정 금액 이상의 보너스에 부과되는 임시세, 미국의 정리기금(Dissolution Fund), 스웨덴의 안정기금(Stability Fund), 외환거래나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 은행세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서는 ‘금융위기책임분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으로, IMF 보고서에서는 ‘금융안정분담금’(FSC: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 미국 및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입장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의 경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 부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임³⁾.

- 부과대상은 통합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로서 은행 및 저축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됨.
- 은행세 수준은 매년 총자산에서 Tier1 자본⁴⁾과 예금보험대상 예금(또는 보험 계약적립금)을 제외한 부채의 약 0.15%
- 은행세는 10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나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비용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음⁵⁾⁶⁾.

□ 둘째, IMF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가운데 은행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은행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고 ‘금융활동세’(FAT: Financial Activities Tax)를 활용하자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제안

- G20는 구제금융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IMF에 여러 가지 세금 또는 추가 부담금 부과 방안들을 평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IMF는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구제금융비용 회수와 금융위기 재발 방지책으로서 금융권으로부터 두 가지 형태의 부담금, 즉 은행세와 금융활동세를 거수하는 방안을 제안
-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세 부과 대상에 모든 금융회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은행세는 자본(은행의 경우 Tier1 자본)과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부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재정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경우 이윤과 높은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활동세 활용을 제안

3) White House, "President Obama Proposes 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to Recoup Every Last Penny for American Taxpayers," Statement & Releases, 2010.1.14.

4) 기본자본, 즉 영구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말함.

5) TARP는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troubled assets)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부터 시행한 금융구제 프로그램임.

6) 예상되는 TARP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1,170억 달러까지 적립될 예정(제안된 세율로는 12년 동안 1,170억 달러가, 10년 동안 900억 달러가 거수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및 IMF의 제안에는 은행세 부과 대상에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금번 금융위기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 예외적인 보험회사의 행태에 기인한 것이며, 보험회사는 고유의 속성상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매우 낮음⁷⁾.

- 최근 가결된 미국 상원 법안은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사후적 금융분담금 부과대상을 통합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와 미연방준비제도위원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회사(nonbank financial company)로 함⁸⁾.
 - 아울러 동 법안으로 인하여 앞으로 재무부 내에 설립될 ONI(the Office of National Insurance)가 금융안정감독위원회(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로 하여금 특정 보험회사를 미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회사로서 지명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⁹⁾.
- 그런데 금번 금융위기에서 CDS(Credit Default Swap)를 취급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켰던 AIG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시스템 리스크는 미미하며,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CDS와 같은 파생상품 취급이 불가능하므로 시스템 리스크 유발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함.

□ 따라서 은행세 부과 대상에 보험회사가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금융회사와 세율을 차등화할 필요

- 제네바협회(Geneva Association)는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보험회사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

7) 한편 현재 제안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은행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부과 대상에 금융회사를 포괄하고 있으며, 독일은 내각의 결정에 근거하여 은행에게만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는 Act SFS 2008:814에 의해서 국내 은행과 은행의 해외 지점이 갖고 있는 부채(예금보호 대상 제외)에 부과하는 것임.

8)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S. 3217

9)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다음에 열거한 기준들에 입각하여 미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 의해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회사들을 결정할 수 있음. 레버리지 정도, 자산의 규모와 성격,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포함한 부채의 규모와 성격, 부외거래에 대한 노출량(Off-balance-sheet Exposure)의 정도와 성격, 주요 은행지주회사 및 주요 비은행금융회사와의 거래 및 관계의 정도와 성격, 가계, 기업, 정부의 신용거래의 원천으로서의 중요성과 미국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원천으로서의 중요성,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권고, 청산 및 지분의 운용, 또는 지급업무, 회사에 의해 소유되기보다 운용되는 자산과 운용되는 자산 소유권의 분산 정도, 또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요소들이 그 기준임. (S. 3217)

- 동 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핵심 보험영업은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보임¹⁰⁾.
- 아울러 제한된 종류의 비핵심 보험영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규모가 막대할 경우에만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결과를 보임¹¹⁾.
- o 실제로 각국에서 시행되었거나 제안된 방안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IMF 제안은 넓은 의미의 금융회사를 포괄하나, 프랑스 및 영국의 임시세, 독일의 은행세, 스웨덴의 기금 등은 은행만을 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킴. KiRi

<표 1> 각국의 분담금 관련 방안들

	방안	시행여부	대상기관	부과기준(Base)
미국	은행세	제안	50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 금융회사	자산-(Tier1 자본)-(FDIC 과세대상 예치금)
미국	시스템정리기금	제안	50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 금융회사	자산규모, 시스템리스크 기여 정도, FDIC가 정하는 그 밖의 요소들
영국	보너스에 대한 임시세	2009.12.9-2010.4.5	은행	25,000파운드 이상의 보너스
독일	은행세	제안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시스템리스크 기여 정도
프랑스	보너스에 대한 임시세	FY2009 보너스에 적용	은행(credit institutions), 투자회사	27,500프랑 이상의 보너스
스웨덴	금융안정기금	시행 중	은행	부채(자기자본 등은 제외)

자료: IMF, G20 중간보고서

10) The Geneva Association, "Systemic Risk in Insurance: An Analysis of 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Special Report of the Geneva Association Systemic Risk Working Group*, 2010. 3.

11)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핵심 보험업무로는 CDS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활동,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과 유가증권 대출(securities lending)을 통한 무리한 단기자본 조성행위 등임.